

#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발명자 및 저작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실시보상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을 말한다.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지식재산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교직원 등”이라 함은 본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교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6.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신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7.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8.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저작·상표·반도체배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등록출원,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4조(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본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필요한 경우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정책
2. 지식재산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의 심의
3.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 등

**제7조(권리의 승계)**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다만,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8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내용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3호서식]

② 2인 이상의 교직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각 발명자의 지분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지분을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자유발명)** ① 직무발명을 제외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자유발명에 있어서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발명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된 내용을 이의신청한 발명자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출원)** 산학협력단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출연경비의 부담)** ① 산학협력단이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전부 승계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되, 산학협력단이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만을 승계하고 외부발명자와 공동명의로 출원을 하거나, 또는 해외출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중 일정금액을 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외부발명자와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방법, 지분비율, 실시허락, 제3자와의 분쟁, 실시·처분보상금의 배분, 계약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약정 또는 계약에 관한 근거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의 유지 또는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등록 후 5년까지 보유하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

당 지식재산권을 양도, 포기 또는 해당 발명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4장 실시계약 및 보상 등

**제19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권·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실시권 설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실용화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발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사업 관련 법령이 기술 등의 실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계약체결)** ① 산학협력단은 제19조의 제3자와 협의하여 실시권 설정계약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1항의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발명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의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실시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실시료와 경상실시료(매출액 대비 정률 또는 정액)로 구분하며 실시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액으로 산정한다.

3.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과의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전조의 제3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자의 사업계획,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실용화에 부적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주장, 발명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 등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실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계약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실시자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책임제한)** 산학협력단과 발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자와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발명자의 기술수준 이상의 실용화, 성공적인 상품화에 대한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약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許與)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처분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실시·처분보상금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 다만, 외부기관 지원 연구비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 외부기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부의 사용기준이 없거나 기타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보상금은 특허출원 등의 제반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수익”이라 한다)의 총 6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비율은 순수익에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순수익의 5%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4. 위 1,2,3호의 금액을 제외한 실시료는 연구진흥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비로 사용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하며,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직원 등에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④ 외부발명자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의 배분비율 기준은 제20조에 의한 실시자와의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바에 의하거나, 또는 별도 약정이 없을 시에는 발명신고서에 신고된 지분비율에 의한다.

**제25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료를 입금 받은 즉시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명자 보상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발명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보상금 지급기간)** ①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졸업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처에 통지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7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처분 또는 기술이전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28조(비밀유지의무)**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관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제재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교직원 등은 이를 확인한 시점부터 3년간 지식재산 관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12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발명신고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

발명의 명칭		(국문) 제출하고자 하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			
		(영문)			
출원/등록번호		상기 발명이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에 한해 기재			
공동출원여부		<input type="checkbox"/> 부천대 단독출원 <input type="checkbox"/> 공동출원			
부천대 단독출원		비용부담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 비용지원 <input type="checkbox"/> 연구비로 전액부담 <input type="checkbox"/> 연구비로 일부부담	
		일부부담 시 부담예상금액			
공동출원		비용부담		타기관 단독부담 <input type="checkbox"/> 공동부담 <input type="checkbox"/>	
		공동출원인명		공동출원 지분율도 함께 기재	
번호		발명자 성명		소속학과 및 직위	
발명자 (부천대)	1	(한글) 김 출 원 (인)		(학과) 전자과	(Tel) 000-0000-0000    지분율(%)    20
		(영문) Km Chul Won (서명)		(직위) 조교수	(E-mail)
	2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발명자 (타기관)	1	(한글)                      (인)		타기관명	(Tel)                      지분율(%)
		(영문)                      (서명)			(E-mail)
연구과제유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정부과제 <input type="checkbox"/> 민간(기업)과제			
연구과제정보		정부부처(관리기관)/기업명		주관기관명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부천대학교	
		연구개발 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명	
		기초연구사업			
		연구기간		해당 연구 연차	
		2009.1.1~2011.12.31		2년차	
				800,000,000	
발명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미공개 <input type="checkbox"/> 이미 공개 <input type="checkbox"/> 공개 예정			
		공개일자	년 월 일 기재(2011년 1월 1일)		
		공개방법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포스터 <input type="checkbox"/> 구두발표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정보	학술지명, 발표장소 등 정보기재		

20    년    1월    1일

상기의 발명을 부천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특허명세서의 발명자와 발명신고서의 발명자가 동일함을 확인하며, 발명자는 상기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부천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양수인(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대표 신고자 및 확인자 (교수)    김 출 원 (인) 또는 (서명)

##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b>발명의 내용 설명서</b>	
<b>발명의 명칭</b>	국문
	영문
<b>&lt;작성기준&gt;</b> 1. 원칙적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사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함. 2.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사자의 지식 범위 : 해당 전공의 대학교 4학년~석사 2년차 정도	
1. 발명의 요약	o 발명의 내용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발명의 Concept을 간략히 기재함.
2. 기술분야	o 본 발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어느 기술분야에 적용되는지를 기재
3. 배경기술(종래 기술) 해결할 과제/목적	o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간략히 기재 o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발명인 경우, 본 발명과 관련되는 종래기술의 개요, 구성, 효과를 기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기재함. o 관련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본 발명 자체로서 독자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목적을 기재함.
4. 본 발명의 구성 (과제의 해결수단)	o 본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필수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한 개념을 기재함. o 개개의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구성)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들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기재함. o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b>대표 도면 첨부 필수</b> .
5. 발명의 효과	o 본 발명과 종래의 기술과의 구성 및 동작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o 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발명효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표시.
6. 구체적인 실시예	o 본 발명을 아래의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함 (약어의 경우, 최초 1회는 full name 기재). o 장치, 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경우, 장치, 시스템에 대한 <b>도면첨부 필수</b> . o 방법, 알고리즘 등의 발명인 경우, 관련 플로우차트 <b>도면첨부 필수</b> o 구조도(시스템 구조), 회로도, 공정도(플로우 차트 등) 등 첨부도면과 관련하여 발명의 각 구성요소 별로 구조,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결합관계와 동작을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함. 실험데이터가 있으면 함께 기재함.
7. 산업상 이용분야/응용가능분야	o 타 기술분야에도 활용 가능하다면 그 기술분야도 기재

## 권리승계합의서(양도증)

<b>발명 명칭</b>	국문			
	영문			
<b>출원·등록 번호</b>	※ 출원 및 등록된 발명을 양도할 경우 출원/등록 번호를 기재하세요.			
<b>양도인</b>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b>양수인</b>	성명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 직위, 주소,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명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 정보제공 주체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발명자 정보 입력)에 제약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발명자(양도인)는 상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부천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의거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동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1.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승계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제249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상기 본인은 부천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문 서 번 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부천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11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결정사항

1. 신청이유 (요약)

2. 결정내용

년 월 일

**부천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